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 페이지는 19년도 지침 기준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3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신 설〉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참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만 성립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음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예: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는 「민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을 좇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의 권리 능력 명확화
20	가.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가.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령개정(18.4.25.~)에 따라 외부추천기관 및 추천배수를 확정적으로 기재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 <table> <tr> <th>구 분</th> <th>~'18.4.24.</th> <th>'18.4.25.~</th> </tr> <tr> <td rowspan="3">추천기관</td> <td>사회복지위원회</td> <td>사·도 사회보장위원회</td> </tr> <tr> <td>지역사회복지협의체</td> <td rowspan="2">지역사회보장협의체</td> </tr> <tr> <td>지역사회보장협의체*</td> </tr> </table>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을 추천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법제처 해석[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 배수(倍數) — 시행일('18.4.25.)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아사 정수의 1/3(소수점 아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시행일('18.4.25.) 이후부터는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 주의 : 사회복지법안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18.4.25.) 이전이라도, 실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사·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삭 제〉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사·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3	라. 임원의 임면(任免)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19조)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u>성폭력범죄</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임원의 임면(任免) 3)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19조)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u>성폭력범죄</u>*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신 설〉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8.10.25.시행) 〈신 설〉	참고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일괄 규정(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8.10.25.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2018.10.25.시행)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적용대상 : 시행일(2018.10.25.)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34	라. 임원의 임면(任免) 3)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내 보충하지 않을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임원의 임면(任免) 4)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및 임시이사 선임·해임(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규칙 제11조) 가) 임원의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법 제20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19.7.16. 시행) ①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후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②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법인이 시·도지사로부터 임원 해임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 (참고) 개정 전 임시이사 선임 사유 :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시이사는 상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함 -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내용 추가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u>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함(법 제22조의3제5항 '19.7.16. 시행)</u> <u>나) 임시이사의 해임</u> <u>-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함.</u> 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④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 법인은 상기 사유로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u>	
35	4)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u><신 설></u>	5)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참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 지자체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단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인인 임원이 될 수 없음(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163(2018.7.4.)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관련 행안부 해석내용 기재
36	5) 임원의 해임명령(법 제22조) <u><신 설></u>	6) 임원의 해임명령(법 제22조, 영 제10조의3) ● <u>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u> <u>-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u> 1. <u>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u>	법령 신설사항 반영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 ●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19.7.16. 시행)	
37	라. 임원의 임면 〈신 설〉	라. 임원의 임면 7)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법 제22조의2) ●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함(법 제22조의2제1항단서, '19.7.16. 시행)	직무집행정지 관련 내용 추가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46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 설〉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보상금의 이자 역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지체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과실(果實)을 즉시 기본재산으로 편입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자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보상금의 이자처리 관련 사항 기재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49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신 설〉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3)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23조 단서 및 시행 규칙 제14조) - 여기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란 다른 조건의 변동없이 단순히 임대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함 ※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불필요한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해 석례 [17-0694, 2018.2.14., 민원인] 참고)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사항 기재
50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 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신 설〉 2) 정관의 변경 〈신 설〉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 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 종전 보고시한은 1월말이었으나 시행규칙 개정('19.1.4. 시행)으로 '19년도부터는 3월말로 변경 2) 정관의 변경 참고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소유 가능여부 ○ 원칙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는 자만 농지소유 가능 ○ 예외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2) 및 제6조에	재산취득보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 관련 내용 추가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실습지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 가능 - 「농지법」(법률 제8352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라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는 계속 소유 가능 ※ 사회복지법인 농지취득인정의 추천기관에 대한 농림부 회신(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3993(2017.8.30.))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취득인정 추천을 해야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회신내용>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시도지사가 법률상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취소,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시·도지사가 추천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 - 향후 법령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54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3)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u>성폭력 범죄</u>가 발생한 때 〈신 설〉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3)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u>성폭력 범죄 및 학대관련범죄</u>가 발생한 때 참고 취소사유 적용 시점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학대관련범죄를 추가 → 시행일('19.7.16.)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60	나. 시·도지사(법 제51조 등) 〈신 설〉	나. 시·도지사(법 제51조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 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 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2019.6.12.시행) -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2019.6.12.)	법령 개정 사항 반영
64	〈신 설〉	바. 종사자 채용 및 결격사유 조회 ●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법 제35조의3, '19.6.12. 이후 종사자 채용시 적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해당 법인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안됨 -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법 제5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35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사항 내용 추가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u>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 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 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u> <table> <tr> <th>조회 주체</th> <th>목 적</th> </tr> <tr> <td>본인</td> <td>본인 스스로 확인(제3자에게 제출 불가)</td> </tr> <tr> <td>설치·운영자</td> <td>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제3자에게 제출 불가)</td> </tr> <tr> <td>지자체장</td> <td>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td> </tr> </table>	조회 주체	목 적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제3자에게 제출 불가)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제3자에게 제출 불가)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조회 주체	목 적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제3자에게 제출 불가)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제3자에게 제출 불가)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117	가.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 ~ <u>별표8</u>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u>1) 시설이 장기요양 기관인 경우, 또는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u>	가.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 ~ <u>별표10</u>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u>동일 법인에서 운영 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u>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표 (별표10) 신설에 따라 시설회계 세출예산(별 표4)의 법인회계전출 의 사유 중 ‘장기요양 기관인 경우’ 삭제								
117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신 설>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u>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u>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118	바. 예산의 전용 3)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u><신 설></u>	바. 예산의 전용 3)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22	가. 회계 총칙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u><신 설></u>	가. 회계 총칙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 <u>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매년 7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u> - <u>상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u>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2018년	2019년	비고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127	가. 후원금의 접수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가. 후원금의 접수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후원금의 이자 사용 관련 사항 추가
130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후원금의 용도 지정 관련 문구 명확화